#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35 발의연월일: 2025. 3. 12.

발 의 자:김형동·김소희·조경태

우재준 · 임종득 · 배준영

박덕흠 · 강대식 · 임이자

박정하 • 조지연 • 권영진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법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법률 제 호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8항제3호 중 "영업정지"를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8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	
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	
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	3
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	
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	
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	
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영업정지</u> , 대행계약 해	<u>3</u> 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⑨·⑩ (생 략)	⑨·⑩ (현행과 같음)